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08호로 2024년 9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주택가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현행화

(안 제4조의6)

나.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규정 신설

(안 제27조, 안 별표 3)

다. 참전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

(안 별표 1 비고 제6호 바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및 제안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및 지급 기준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의6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목을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대 설치면 수 제한 규정 삭제 및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였으며,
- 안 제27조와 별표3에서는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과 관련하여 신설함.
- 별표1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으로 시대의 흐름과 요구 사항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우리 구 또한 조례 제정 이후 27번이나 개정되었음. 금번 제출된 안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의 현행화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음.

- 우리 구는 주택가의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의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안 제27조에서는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지 발굴 및 제안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신설하고자 하였음.
- 한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4호제거목」 1)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에 근거하여 자투리땅 조성지 발굴 활성화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1 비고 제6호 바목의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 대상 추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최고의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우를 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정 신설로 보임.

-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1996년 2월 28일 제정 및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27번 개정되었음. 이 조례의 제정 이유가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